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0호 2011. 9. 7.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89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8,9차) 고시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473호 정선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초안)공람 공고..... 2
- 정선군공고 제2011-490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 정선군공고 제2011-495호 2011년도(FY2010)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8
- 정선군공고 제2011-49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정선군공고 제2011-498호 2011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38
- 정선군공고 제2011-499호 2011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의림천 추가)... 4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89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6.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 규 모 : 법정리 3, 행정리 5, 자연마을 15
- 면 적 : 7,008ha(농경지 330, 임야 6,501, 기타 177)
- 가구 및 면적 : 187호(농가 121, 비농가 66), 460명(남 250, 여 210)
- 사업내용 : 소득기반 3개사업(8차- 2개사업, 9차-1개사업)
8차- 장(두)류제조시설, 고랭지채소가공시설, 9차- 전통문화체험장

4. 사 업 비 : 1,048백만원(자부담 262백만원 미포함)

※ 전체분 : 6,201백만원(자부담 585백만원 미포함)

5. 사업예정기간 : 2011. 8~ 2011. 12(전체분 2007년 ~ 2011년)

6. 사업의 효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의 지속적 인 발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1-473호

정선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공고

정선(정선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과 이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람·공고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29.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읍 북실리 (주)풍산산업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과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2. **정선(정선읍)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관리지역 27,285㎡ ⇨ 31,800㎡(증 4,515㎡)
보전관리지역 4,515㎡ ⇨ - ㎡(감 4,515㎡)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 1) 풍산산업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31,800㎡
 - 다.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 1) 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 : 정선읍공공하수처리시설 A=16,902㎡ ⇨ 16,862㎡(감 40㎡)
 -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31,800㎡
 - 1) 풍산산업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세부내용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마.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정선읍사무소
-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20일간 (2011. 8. 29 ~ 2011. 9. 19까지)
-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제출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490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29.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화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분산 처리되고 있는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제⑤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할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기타 전기,소방,통신은 8천만원)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4.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받는다 : 정선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
 - FAX : 033) 560-2272
- 문의사항 : 033) 560-2277 강승태

6. 참고사항

- 정선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할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기타
전기,소방,통신은 8천만원)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 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④ 《생 략》 《신 설》</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 --- ②~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 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 이 행할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보건소,상하수도사업 소,의회사무과,읍면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 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기타 전기,소방,통 신은 8천만원)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p>

+

관계법령 발췌서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1-495호

2011년도(FY2010)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의거 『2011년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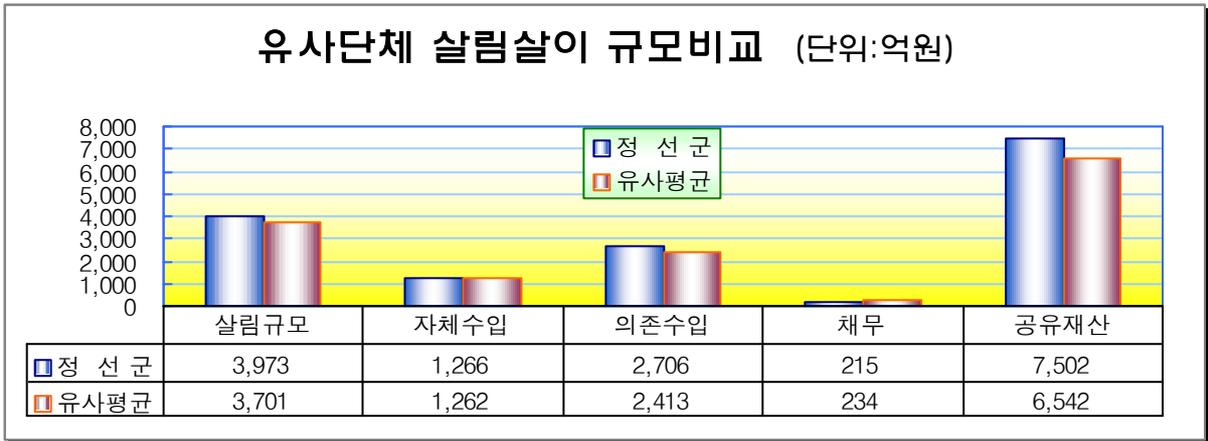
2011. 8. 31.

정 선 군 수

□ 우리 군의 2010년 살림규모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는 3,973억원으로, 전년대비 1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66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7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706억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68.1%입니다.
- 2010년에는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88억원과 태백권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군의 채무는 215억원이며, 군민 1인당 채무액은 53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9년 토지 외 4종(2,06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종(781억원)을 매각하여, 총 7,50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701억원)보다 272억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262억원)보다 4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413억원)보다 293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234억원)보다 19억원이 작은 규모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액 동종단체 평균액(6,542억원) 과 비교하여 960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2010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14%이며(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서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55.45%(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 2010년도 살림살이, 자체수입, 의존재원, 공유재산액은 동종단체 보다 높음 반면 채무 규모는 낮은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전체적인 2010년 살림살이 규모는 2009년도와 비교하면 일정부분 성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내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특 수 공 시

2011 특수공시 대상사업 내역

【기준년도 : 2010년도】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비 고
1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 2010년 ▪ U형전망대 1식, 편의시설 등 	10	
2	타임캡슐 공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 2010년 ▪ 타임캡슐 5,868개, 편의시설 등 	36	
3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 2011년 ▪ 종합체육시설 조성 1식 	845	
4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 2010년 ▪ 골프장 그린조성, 골프하우스 건축 	335	
5	해피아리 아파트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 2010년 ▪ 아파트 2동 140세대 	138	

1.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

실 태

우리군 새로운 관광자원 미흡

추진방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고공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2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 사업규모 : 면적 A=4,200m²
- 사 업 비 : 10억원(군비 10억)
- 주요시설 : U형전망대 L=12m(캔틸레버), 매표소 및 화장실 1동,
주차장 A=2,000m², 그늘막 2개, 평의자 6개, 태양광발전
시스템 1식

■ 사업진행 현황

- 2009년 12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0년 2월 : 용역완료 및 계약심사
- 2010년 3월 : 계약 및 공사착공
- 2010년 4월 : 산지전용 허가(국유림)
- 2010년 8월 :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0년 10월 : 공사완료
- 2010년 11월 : 병방치 스카이워크 운영관리조례제정

■ 조 감 도



■ 준공완료 전경사진



■ 2. 타임캡슐 공원 조성

실 태

폐광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황폐화

추진방향

우리군 새로운 관광자원조성 및 인프라구축 필요성 대두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70-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사업규모 : 면적 A=42,807m²
- 사 업 비 : 36억원(군비 36)
- 주요시설 : 매립형 타임캡슐 5,868(12지간 * 489개), 주차장 1,587m²
화장실 1동, 사무실 1동, 편의시설 1식

■ 사업진행 현황

- 2006년 3월 : 사업계획 수립
- 2007년 2월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한국관광공사)
- 2008년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8년 7월 : 계약 및 공사착공
- 2010년 11월 : 공사완료
- 2010년 11월 : 타임캡슐공원 운영관리조례제정
- 2011년 6월 : 공원이관 및 개장(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조 감 도



■ 준공완료 전경사진



3. 정선종합경기장 조성

실 태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군민의 체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성화를 도모하고, 각종대회 및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인 종합경기장 조성을 통한 군민의 체육활동 및 대단위 행사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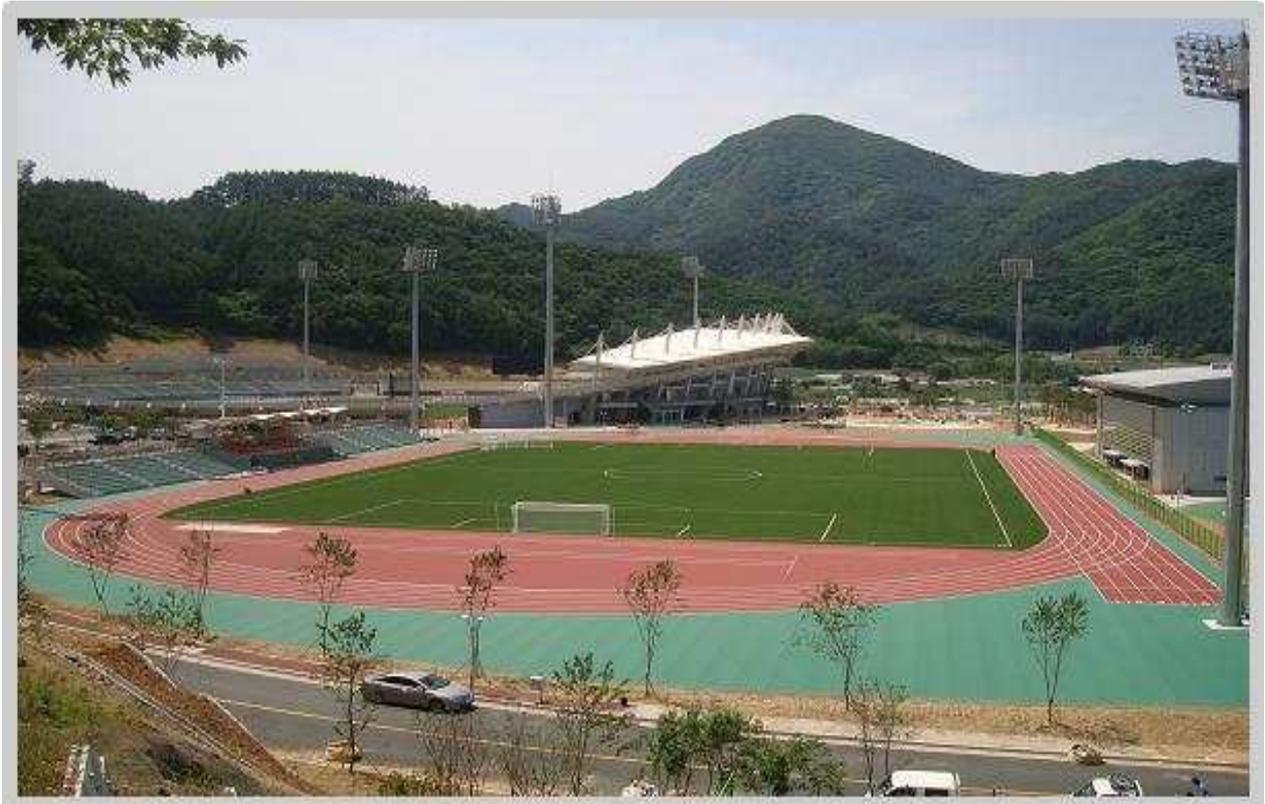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67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78,206㎡
- 사 업 비 : 845억원(국비 840.3억, 군비 4.7억)
- 주요시설 :
 - 종합운동장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천연잔디구장(12,000석)
 - 실내체육관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2,000석
 - 궁 도 장 : 21사대, 테니스장 (8면), 보조경기장(인조잔디)
 - 기타시설 : 인라인장등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
장, 보조경기장, 기타 야외 체육시설

■ 사업진행 현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4.6~2005.1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 2006.11~2008.8
- 철도관통 지하차도 개설공사 : 2008.4~2009.11월
- 2008년 12월 감리사 선정(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
- 2008년 12월 시공사 선정(주>계룡건설)
- 2008년 12월 착공
- 2011년 6월 사업준공

■ 전경사진(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 전경사진(체육관)



■ 4.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실 태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 및 골프장 수요 불균형

추진방향 낙후된 폐광지역 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3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업규모 : 연면적 502,353㎡
- 사 업 비 : 335억원(국비 152억, 도비 33억, 민자 150억)
- 주요시설 : 골프코스 9홀, 클럽하우스 1동, 관리등 1동 등

■ 사업진행 현황

- 2006년 11월 업무협약 체결(정선군⇔국민체육진흥공단)
- 2007년 10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정선군,공단)
- 2008년 4월~09.1 실시계획 의제협의
- 2009년 1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9년 2월 기공식 및 사업착공
- 2010년 11월 클럽하우스 준공
- 2011년 6월 골프코스 조성공사 완료
- 2011년 8월 조경 보완 및 모노레일 설치공사 완료 예정
- 2011년 8월 실시계획 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등록 예정

■ 조 감 도



■ 전경사진



■ 5. 해피아리 아파트 건립

실 태 폐광지내 각종 개발로 인한 주택난 심화

추진방향 폐광지내 공동주택 건립으로 주택난 해소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5층 2개동 140세대
(47.18㎡:86세대, 58.21㎡:54세대)
- 사 업 비 : 13,836백만원(도비 13,836백만원)

■ 사업진행 현황

- 2007년 11월 타당성 용역(강원지역정보연구원)
- 2008년 2월 실시설계(원양건축사사무소)
- 2008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정선군)
- 2008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강원도)
- 2008년 10월 사업착공(창경종합건설)
- 2008년 12월 감리업체 선정(동화종합감리전문회사)
- 2011년 11월 사업준공(예정)

■ 조 감 도



■ 공사중 전경사진



정선군 공고 제 2011-49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31.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금고 수의계약 관련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각호의 일부조항 삭제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일부수정(안 제6조제2항제1호)
-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 범위 확대(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본문중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7인 이상 9인 이하”를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의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고지정)① (생 략) 1.~2. (생 략) 3. <u>군이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4. (생 략) 5. <u>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③ (생 략)</p>	<p>제4조(금고지정)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생 략) ② (생 략) 1. <u>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사항</u> 2.~4.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7인 이상 9인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2. (생 략) <u><신 설></u></p>	<p>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u> ----- 2.~4. (현행과 같음) ③ ----- <u>9인 이상 12인 이내</u> ----- ----- ----- ----- 1.~2. (현행과 같음) 3. <u>지방의원</u></p>

+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①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②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 A(특별·기금회계)- 갑은행, B(특별·기금회계)- 을은행, C(특별·기금회계)- 병은행
-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수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

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3. 금고지정 평가기준

㉠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5)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5)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5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칙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5)	6. 기타사항(15) - 항목 가. 000(5) 나. 000(5) - 세부항목 다. 000(5)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지 칙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0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BIS비율 10%이상인 경우, 만점처리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5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칙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무수익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5) - BIS 자기자본비율(9) - 추가배점 - 무수익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대손충당금적립율(3) - 항목추가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9)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 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5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	15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

Lively
Gangwon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조례) 개정 요청

1. 관련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1825(2011.6.1)호 및 강원도 감사관 - 6330(2011.6.16)호와 관련임.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불임과 같이 개선 권고한바 이를 통보하오니
3. 시?군에서는 불임을 참고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조례)」을 2011. 9. 30(금)까지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개정시 지난 2009. 6. 10.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군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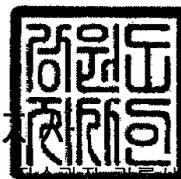
가. 개정대상 자치법규 : ○○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조례)

나. 개정 조문 : 수익계약 관련 아래 조문 삭제

- 강원도의 금고를 ○○시?군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정사항 : 2011. 9. 30.한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붙 임 : 1. 개정대상 시?군 자치법규 현황
2.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각 1부. 끝.



강원도

수신자 춘천시장(세무과장), 원주시장(세무과장), 인제군수(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재무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호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주무관 지승섭 경리담당 지승태 세무회계과장 전결 06/21
홍종각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14214 (2011.06.22.) 접수 세무회계과-14278 (2011.06.22.)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884 /전송 033-249-4028 / jiseng@korea.kr / 공개

개정대상 시·군 자치법규 현황

시·군명	개정대상 자치법규	비 고
춘천시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원주시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권익위 삭제 권고
강릉시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동해시	- 규칙 제2조제3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태백시	-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속초시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권익위 삭제 권고
삼척시	- 규칙 제2조제3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홍천군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횡성군	- 규칙 제5조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영월군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평창군	-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시·군명	개정대상 자치법규	비 고
정선군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행안부 예규와 상충, 권익위 삭제 권고
철원군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
화천군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
양구군	-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
인제군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삭제	“
고성군	- 규칙 제6조제3호 및 제5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
양양군	-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예규 제244호 ('09.6.10) 개정 및 위임사항 미반영	“

정선군 공고 제2011-498호

『2011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선정을 위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
정 선 군 수

1. 신청서 접수

- ① 접수기간 : 2011. 9. 01(목) ~ 9. 16(금) 18:00시~
- ②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③ 접수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033- 560-2440) “붙임 2서식”

2. 지정(평가)기준

- ① **가격 기준 (60점)**
 - (가격 수준)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② **서비스 기준 (20점)**
 - 종사자의 친절도(10점) 및 영업장의 청결도(10점)
- ③ **공공성 기준 (20점)**
 - (정부 시책)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5점) 등
- ④ **가점 부여 기준 (10점)**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 평가표(붙임1)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3. 지정절차

㉑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
- 읍·면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군수에게 추천

< 신청 배제 >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㉒ (현지 실사·평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평가

㉓ (최종 결정 및 통보) 현지실사·평가를 토대로 지정 여부 검토 후, 도 및 행안부 협의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4.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㉑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 배제, 보증수수료 0.2%p 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11년 4,000억) 대출 시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 검토

㉒ (행정 지원)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확대

- (행안부 및 관계부처) 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재정부) 모범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포상에 포함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시 고려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
- (중기청) 자영업 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 (시군)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도 물가정보망 모범업소 홍보,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지원
- 매월 반상회보에 모범업소 소개, 시군 홈 페이지에 별도 코너 마련, SNS 활용 홍보, 모범업소 전용 안내 어플 제작·배포 등
- 위생용품 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표찰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붙임 1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기준표**

< 평가표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 (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0		
			평균가격 미만(5%미만)	15		
			업소가격=평균가격	10		
			업소가격>평균가격	-		
	가격안정 노력(30점)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여부	가격인하(1년 내)	30		
			가격동결(1년 이상)	20		
			가격동결(6개월 ~1년)	15		
			가격동결(6개월 미만)	10		
			최근 1년내 인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물가상승률 미만</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5</td> </tr> <tr> <td>물가상승률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able>	물가상승률 미만	5
물가상승률 미만	5					
물가상승률 이상	0					
서비스 기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0			
	영업장 청결도(10)**	상	10			
		중	5			
		하	0			
공공성 기준 (2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2가지 모두 이행	15			
		1가지만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기타 정부시책 이행여부(5점)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2가지 이상 이행	5			
		1가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은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

** **종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는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반영, 등급 간 배점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가점 부여 >

분야	배점	평점
특정계층 또는 세대 할인여부 -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3가지 이상 할인	5
	2가지 이상 할인	3
	1가지 할인	1
정부 및 지자체장 포상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상 이상	5
	장관	3
	자치단체장	1

정선군공고 제2011-499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추가) 합니다.

2011. 9. 2.
정 선 군 수

소하천 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의림천 (추가)	2011소하 천 (의림천) 정비	예미리 315- 5	예미리 697- 9		775		'11.0 7	'11.1 2	수해피해 로부터 주 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 을 위하여	손실 보상
			- 이	하	여	백 -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건설방재과 비치)
3. 위치도(건설방재과 비치)